

처리기간 : 3일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통 관 고 유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수입실적	1년간 수입신고건수		납부은행	은행 지점
	일일평균 수입신고건수			전화번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신청인 :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1부.
 ② 통합납부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1부.

통합납부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통합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 익일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통합납부서는 전일 신고수리분에 대하여 익일 아침에 세관장이 발행)
2.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건에 대하여는 개별납부서로 관세 등을 납부하여서는 아니된다(중복납부 방지)
3.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통합납부명세서상이 신고번호, 세액 등을 신고수리 필증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납부거수 누락 및 납부세액 상이 방지)
4.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납부서 발행이 취소되고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함)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임을 알고 있으며 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